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아 이 돌 봄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7283호, 2020.5.19. 공포, 2022.1.1. 시행)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타 법 개정에 맞춰 위탁 기관 인용조문을 정비(안 제5조제3항)
- 나.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(안 제6조)
- 다.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,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7조 관련 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,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,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,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,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,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,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, 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·단체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전문개정>

1.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 2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·인성 검사
 3.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
 4. 법 제10조의3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종사자 교육훈련
 5.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,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
 6.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
 7.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·제공
 8.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
 9.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 10.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
 11.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,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
 12.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·운영
 13.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
 14. 아이돌보미의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교육,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
- 별표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1호	100	200	300

나.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휴업·폐업 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2호	100	200	300
다.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3호	100	200	300
라.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4호	100	200	300
마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질문·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37조 제1항제5호	100	200	300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· ② (생략)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. 1.·2. (생략)	제5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----- 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,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,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,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·단체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	제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,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,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,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,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,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,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, 법 제19조의

·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
3.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4.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·제공
5.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6.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
7.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,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
8.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

2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·단체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전문개정>

1.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적성·인성 검사
3.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
4. 법 제10조의3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종사자 교육훈련
5.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

취소

- 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채용, 근로계약 체결, 복무관리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
6.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7.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·제공
8.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
9.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
10.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
11.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,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
12.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·운영
13.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
14. 아이돌보미의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

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에 따른 퇴직연금교육,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